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

경찰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, 직위해제 외에 본인의 원(願)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(2024. 5. 00. ~ 6. 00.)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휴직·직위해제·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 본인의 원(願)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재직증명서의”를 “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”로, “재직증명서를”을 “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직증명서”를 “재직증명서, 휴직증명서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“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7조의3”을 “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전력조회회보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인사발령 통지서) ① (생략)	제4조(인사발령 통지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「공무원 인사기록 ·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임용권자는 휴직 · 직위해제 ·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「공무원 인사기록 ·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원(願)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증명서등의 발급) ① 경찰청, 시 · 도경찰청, 경찰대학, 경찰인재개발원, 중앙경찰학교, 경찰병원, 경찰서, 직할대,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“경찰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	제8조(증명서등의 발급) ① -----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-----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

여야 한다.	증명서를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「공무원 인사기록 ·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.	③ ----- 재직 증명서, 휴직증명서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의2(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)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「공무원 인사기록 ·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(이하 “표준인사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작성 · 유지 · 관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· 유지 · 관리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) ① ----- -----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6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6조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인사기록의 종류) ① 삭제	제12조(인사기록의 종류)

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12. 전력조사회보서</u>	<u>12. 전력조회회보서</u>
13. ~ 16. (생 략)	1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③ 삭 제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